## 고소장

고소인

성명: ㅌ

주민등록번호: ㅌ

주소: E 전화번호: E

피고소인 성명: ㅌ

## 고소취지

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,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법적사실 및 고소이유

- 1.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ㅌ 관계로서, ㅌ ㅌ에 있었습니다.
- 2. 당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"ㅌ"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.
- 3.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를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피고소인의 계속된 추행 행위로 고소인은 극심한 정적 수치심을 느꼈고, 이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/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정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 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

## 결론

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정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, 이로 인한 고소인의 신체적/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므로,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 - 증거자료

1. 증제1호 - 사건이 촬영된 CCTV 파일

위 고소인

ㅌ (서명 또는 인)

ㅌ 귀중